

제 - 호		
<b>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 통지서</b>		
신청인	법인명(상호명)	대표자 성명
	주소(소재지)	
제품 개요	제품명(상품명)	제품번호(모델명)
	제품규격	판매단위
측정결과	kgCO <sub>2</sub>	
위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은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를 통지합니다.		
년 월 일		
산림청장 직인		